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6선거구, 장상기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지난 7월 20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입지요건과 시행예정구역의 지정과 절차,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본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을

공공임대산업시설, 공공임대생가 등으로 확대하여

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○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중

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

구역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

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

도시관리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
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